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870호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안일자 : 2023년 05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1일

2.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설 정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의 개편을 통해 시정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정의의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제4호).

나.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의 근거규정 삭제(안 제3조).

다. 기타 띄어쓰기, 맞춤법 등 용어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9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2020.8.5.)되면서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폐지 예정인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됨.

나.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폐지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제정(1999.3.20.)하면서, 외국인투자 정책을 자문하고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설치함.
-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분야별로 외국인 투자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30명(현원 23명)으로 구성되며, 2021년까지 총 52차례 개최됨.

<외국인투자자문회의 개요>

- 주요기능
 - 외국인투자 정책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 구성 및 개최요건
 - 외국인 투자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외국인 30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 위원 임기 : 3년(위원장 및 부위원장 : 2년)
 - 매분기별 개최(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구성현황

위원장: 에릭 호프만										
계	금융		컨설팅		제조	경제		법률	기타	
23	3		3		2	8		2	5	
지역 : 북미 8, 유럽 7, 아시아 7, 오세아니아 1										
대륙	북미(35%)		유럽(31%)			아시아(31%)			오세아니아(3%)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인원	7	1	3	1	3	2	1	2	2	1

- 그러나 자문 성과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시정반영 실적이 미흡하고, 행사성 회의 형태와 투자유치 관련 안건의 한계로 인해 존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2022년에는 자문위원들의 개인일정과 지방선거로 인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함.
- 이에 서울국제경제자문단과 통합 후 서울국제정책고문¹⁾으로 개편 계획을 수립(2023.3.31.)하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함.

<자문단 개편 전·후 비교>

개편 전		➔	개편 후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외국인투자자문회의		서울국제정책고문	
국내·외 기업 CEO 위주			국내·외 글로벌 전문가	
경제, 산업, 금융 위주			시정 주 분야 현안	
연 1회 대면 정기총회	분기별 회의		수시/온라인/서면/대담 등 다양화	
총회에서 주제별 자문 진행하는 자문위원회 방식			전문분야/시정현안에 따른 개인별 자문 방식	
3년(계속 연임가능)			3년(1회 연임가능)	
각각 30명 이내			100명 이내	
경제정책과	금융투자과		국제협력과	

1) 종전의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과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을 통합하여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고문 역할이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

- 개정안은 인용법령 현행화, 용어정비 등과 함께 폐지가 결정된 자문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자문기구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
- 다만, 외국인투자자문회의가 폐지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정책 수단이 사라지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